

구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1.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구미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 (위원장) 구미보건소장 → 부시장
-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 구미보건소장

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9조)

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구미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 내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자문
5.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미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 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

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
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 시행령」

- 제3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를 말한다. 이 경우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가 2명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1)부시장이나 행정(1)부지사를 말한다.
- ②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소 관 부 서		보건행정과
입 안 자	과 장	이 우 영
	담 당	이 병 문
	담 당 자	이 영 지 (480-4012)